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06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윤영석 · 이인선 · 서지영
곽규택 · 구자근 · 김태호
서일준 · 박대출 · 이상휘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

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쟁 해결방법 중 당사자가 사전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4(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법에 따른다.</u> <u>② 제1항에 따른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쟁 해결방법 중 당사자가 사전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u> <u>1.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u> <u>2.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u>